#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71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 : 안호영 · 김성주 · 김윤덕

송옥주 · 양이원영 · 양정숙

윤미향 • 윤준병 • 이원욱

임종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재활용시장은 영세업체 비중이 높아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임.

폐지·플라스틱·비닐 등과 같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초 공공서비스임. 따라서 주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아울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께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한편, 그동안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납부 대상 업체로 하여금 불편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유사 타법 사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 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 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과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하며, 각 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이 조에서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 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

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위한 원료물질, 그 밖의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보관료,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보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에 제3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 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폐
	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u>납부) ① 제12조에 따른 폐기</u>
	물부담금과 제19조에 따른 재
	활용부과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하며, 각 가산
	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의무자
	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
	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
	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
	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u>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u>
	③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
	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 ④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 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위 한 원료물질, 그 밖의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비축하는 재 활용가능자원 등의 보관료, 운 반 등에 드는 비용은 비축을 의뢰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 안정 화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규모 미만의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보관, 운반 등에 드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 설>

<신 설>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 보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시장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 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